

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135호)

○ 2000. 3. 14.

○ 총무재무위원회
위 원 장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0. 3. 2. 서초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00. 3. 2.
- 다. 상정일자 : 2000. 3. 14.
- 라. 위원회 개최회수 및 일수 : 제97회 임시회중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(1회1일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차천복)

가. 제안이유

- 공직사회의 활성화 및 가정과 직장의 양립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여성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, 남·여 평등이념의 실현을 확대하기 위하여 경조사 특별휴가대상을 조정하는 한편, 기타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골자

-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60일의 출산휴가의 허가를 임의규정에서 근로기준법과 동일하게 강제규정으로 변경하여 출산휴가의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함.(안 제24조제2항)
- 임신한 이자공무원에게는 정기검진을 위하여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,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 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유아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함. (안 제24조제3항 및 제4항)

- 남계(男系)와 여계친족간(女系親族間)의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.(안 별표3)

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 (보고자 : 전문위원 김재근)

가. 검토내용 : 생략(검토보고서 참조)

나. 검토결과

- 여성공무원의 출산휴가 개선 등 공직사회의 활성화를 도모하며, 경조사 특별휴가의 대상을 남녀 평등이념에 맞추어 조정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,

□ 주요골자는

- 임신중의 여자공무원에 대한 출산휴가(60일)의 허가를 “임의규정”에서 “강제규정”으로 변경(안 제24조제2항)
- 여자공무원의 매 생리기와 임신한 여자공무원에게는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여성보건휴가를 허가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24조제3항)
- 생후 1년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자공무원에게는 1일 1시간의 육아 시간을 허가할 수 있도록 신설함.(안 제24조제4항)
- 남계(男系)와 여계친족간(女系親族間)의 경조사 특별휴가 대상을 남녀평등이념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고, 부모사망 및 탈상시의 휴가일수를 배우자의 경우와 동일하게 조정함.(안 별표3)

□ 검토의견

- 공직사회에서 갑자기 비중이 높아지는 여성공무원의 출부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1999.12. 7 대통령령 제16,610호로 개정되었고,

- 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의하면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공무원법 또는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,
- 개정조례안의 내용을 검토한바 각 자치단체간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지방공무원복무조례 개정표준안(서울시 인사12100-107, 2000. 1.13)이 시달되었고, 현행제도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.

4. 질의 및 답변요지

질> 서초구청 여성공무원의 비율은 어떻게 되며 특별휴가 및 임신기간중 매월 1일의 보건휴가를 줄 경우 업무에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?

답> 서초구청의 여성공무원은 391명(기혼 292명, 미혼 99명)으로 전체 공무원에 대한 비율은 28.4%이며, 일부공백에 대한 대처에 대해서는 임신여직원 및 유아를 가진 여직원이 많지 않고, 많은 여성공무원이 이 규정에 따라 휴가를 신청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어 업무추진에는 별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.

질> 여성공무원이 60일간의 출산휴가를 갈 경우 업무대직은 어떻게 하고 있으며 생리휴가를 신청할 경우 휴가를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 주고 있는지?

답> 여성공무원이 출산휴가를 갈 경우 업무분장상의 대직자가 그 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, 생리휴가를 활용하는 여성공무원이 거의 없는 실정임.

질> 현재 보건휴가등 특별휴가를 활용하지 못하였을 경우 유급보상 제도는 있는지?

답> 특별휴가에 대하여는 유급보상제도가 없으나, 공무원 법정연가의 경우에는 연가를 가지 못한 일수만큼 예산의 범위내에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.

질> 경조사별 휴가일수의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아버지로서 차리해야 할 일들이 많은 짐등을 감안할 때, 처의 외증조부모 5일, 자녀 3일의 특별휴가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데?

답>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은 '99년 12월 7일 대통령령 제16610호로 국가공무원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일치시키기 위함임. 향후 조례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한 부분이 있을 경우 이를 개선도록 검토하겠습니다.

질> 회갑의 경우 본인 및 배우자에게 5일의 휴가를 주는 것은 불합리하며, 이 경우에는 본인 연가로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?

답> 공무원 재직시 회갑을 맞이하는 경우는 현행 공무원법상 5급 이상의 공무원만 해당됨. 따라서 동 규정은 전 공무원에 해당되지 않음으로 운영에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것임.

5. 토론자 및 토론요지

◦ 보류동의안개진(토론자 : 허명화위원)

여성공무원들의 권리확대를 위해서 본 조례 개정은 바람직하다고 보나 경조사별 휴가일수에 본인, 배우자의 회갑의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현실감이 없다고 보면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합리적으로 본 조례를 보완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보류한다는 동의가 있었으나 이에 대한 재청이 없었음.(의제불성립)

◦ 반대토론개진(토론자 : 허명화위원)

경조사별 휴가일수표준 본인 및 배우자의 회갑일수 5일과 사망부분중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, 조부모, 외증조부모, 외조부모로 확대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고 그 외 여러 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반대토론을 개진함

6. 수정안의 요지 : 없음.

7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출석위원 8명중 찬성 6명, 반대2명)

8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음.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.

10. 체계자구정리내용 : 없음.